

2012년도

기성회회계 실행예산서 편성지침



2012. 4.

전북대학교

2012년도 기성회회계 실행예산서 편성지침

예산편성 기본방향

『Vision 2020 장기발전계획』에 따른 “세계 100대 대학, 전국 10위권 대학 진입”을 목표로 한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원 및 집행의 효율성 도모

1. 등록금 3년 연속 동결 및 '12년 인하(5.6%)에 따른 초긴축재정 운영

- 예산절감 노력, 재정 운용의 건전성 및 내실화 도모
- 타성적·관행적 추진사업 전면 재검토 → 비효율성 제거
 - 주요사업비의 2011년도 집행 성과 평가 : 재정사업평가위원회

2. 대학 경쟁력 강화 및 각종 평가지표 향상 사업 집중 투자

- 학생장학금 수혜범위 지속적 확대
- 취업률 향상 및 학생지원 사업, 교육환경개선, 시설비 등 강화
- 대학 특성화 관련 사업 집중 지원
- 학생실험실습비 전년도 수준 유지 * 실습기자재비(국고)는 별도 배정

3. 교육환경개선 및 수요자 복지 지원

- 쾌적한 캠퍼스 환경 구축
- 교수·학생·직원 복지 및 제도 개선 추진

4.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및 감사원 지적사항 반영

- 각종 수당 편법 신설 또는 과다 편성 금지, 기타 부당 집행사례 등
- 예산낭비 사례, 생활관 회계, 부외계좌 등
 - ※ 「국립대학(교) 비국고회계관리규정」 개정('12.2.27) 반영

5. 예산편성 과정에 구성원 참여확대

- 예산 요구·편성 단계에서 구성원의 의견 수렴
- 심의 과정에 구성원의 참여 확대

II 예산편성 기본지침

1. 세입부문

◇ 회 비

- 2012년도 기성회비 책정(5.6%인하)
 - * 제4차 등록금심의위원회('12.1.26)에서 최종 결정
- 재학생수 : 2011.11.1 기준 [1학년은 2012학년도 입학(모집) 정원]
- 등록률 : 2011학년도 실제 등록률 적용

◇ 이월금

- 전년대비 세계잉여금 감소('11 : 119억원 → '12 : 75억원)
 - * 사고이월금은 세입예산에 편입하지 않음

◇ 보조금 :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, 타 회계의 보조금 등 계상

※ 모든 수입은 기성회회계에 계상하여 관리(부외계좌 관리 금지)

* 특히 부속기관 등에서 별도 관리하는 일이 없도록 함

◇ 잡수입 : 이자 수입, 과년도 수입, 타 회계의 공공요금 부담금, 기타 수입 등 계상

◇ 수입대체경비 :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계절수업 수업료, 공개강좌수강료, 생활관비, 어학강좌, 평생교육강좌 등 계상

2. 세출부문

- 세출예산 편성기준 : 2011.12.1 현원
- 국고지원 부족분(강의료, 공공요금, 연료비, 용역비 등) 우선 투자
- 학생 실험·실습의 내실화를 위하여 실험·실습비를 대학 운영비와 분리 별도 편성 ※ 운영비 및 실험실습비는 Ceiling으로 배분하여 기관 자율로 편성
- 사업성경비는 성과와 예산 간 연계를 통해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
- 대학의 비전과 전략 및 주요사업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반영
- 주요사업비는 사업부서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사업별 총액으로 배정하여 계상
- 여비, 업무추진비 및 회의수당 등 소모성 경상경비는 기관운영 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 * 권익위 권고 및 감사원 지적사항 준수
- 전년도 사고이월 분은 세출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함
※ 과년도 지출로 표기 - 회계프로그램 상에서만 예산배정 입력
- 사업의 성과분석 및 본부 주관부서에서 표준 기준을 정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본부 사업주관 부서에 예산을 총괄 배정하여 관리
 - 교육과정개편, 국내외연구교수 선발 지원업무 : 교무처에 총괄 배정
 - 기획, 평가, 특성화 지원업무 : 기획처에 총괄 배정
 - 연구소관리, 학술활동 및 학술대회지원, 특별사업단 대응투자 등 연구기반 조성업무 등 : 산학협력단에 총괄 배정
 - 입학관련 지원업무 : 입학본부에 총괄 배정
 - 취업활동 및 고시반 운영 지원 사업 : 취업지원본부에 총괄 배정
 - 신축건물 비품, 멀티기자재 확충사업, 기타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: 사무국에 총괄 배정 집중 관리
- * 단, 기존 노후비품 교체, 각 기관에서 소규모 추진하는 사업 등 해당부서에서 추진

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기관에 이체 배정

- 산학협력단 출연금, 대응투자연구비는 간접연구경비에서 충당하고 간접연구경비에서 수행하는 목적 사업을 기성회회계에서 수행
 - 각종 사업단(센터)의 국고보조금 대응투자비를 계상하되 대응투자에 대하여는 투자기준을 설정하여 중복투자나 과다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며, 대응투자예산이 대학사업을 위하여 재투입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을 발굴하여 기성회 부담 경감 유도
- 보조금은 사업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, 국고보조금의 추가 교부 시에는 사업 목적대로 세입·세출예산에 편성 집행
- 예산 성립 후 목간 전용은 최대한 억제하며, 무분별한 예산 집행과 편성을 방지

■ 참고사항

- ▶ 대학의 전체 재원을 파악하여 각 부서간 사업간 균형있는 재정 집행이 이루어 지도록 함
- ▶ 각 부서의 사업비 예산은 자체 예산편성위원회에서 사업의 중요도 및 '10, '11년 실적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되 예산편성위원회 심의 시 예산집행 주무부서와 각 부서장이 참석하여 당해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
- ▶ 비품(기자재 포함)은 2012년도 물품수급계획에 반영된 물품에 한하여 계상하되 교체 시는 내용연수가 경과한 물품을 원칙으로 함
- ▶ 안전관리비 및 공공요금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종 연구사업의 간접경비에서 일정액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함
- ▶ 세수증대, 세출절감 등 대학의 재정확충 및 경비절약에 기여한 경우에는 평가 등을 통해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함.
- ▶ 2012회계년도 편성 후 15일 이내에 세출예산 과목 및 내역을 포함한 기성회회계 세

출예산집행지침을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

- ▶ 「국립대학(교) 비국고 회계관리규정」 및 “201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지침” 준용

III 항목별 세부지침

1. 기본사업비

가. 인건비

○ 교원 및 일반직 연구보조비

* 지급단가 및 횟수 : 전년도와 동일 계상

○ 기성회직 보수

※ 기성회직원의 인건비는 2012년도 국가공무원 보수에 준하되 본교와 전국대학 노동조합 전북대학교 지부간에 체결된 임금협약에 의하여 책정

◇ 급 여

· 1종(사무원, 사역원) : 추후 노사 임금협상 결과 반영

* 직급제 전환 봉급책정표 기준으로 산출

· 2종(위생원) : 추후 노사 임금협상 결과 반영

◇ 기성회 제 수당 : '11년도 수준으로 유지

◇ 복리후생비 : 일반회계 지급단가 기준 적용

◇ 보상금 및 퇴직충당금 : 법정부담금 적용

○ 객원 및 초빙교수 등

◇ 지급단가

· 객원교수 : 전년대비 동결 계상

· 초빙교수 및 석좌교수 : 전년대비 동결 계상

* 4대 보험료(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) 및 퇴직충당금 반영, 연차적 확보계획에 따라 적정 퇴직적립금 계상

○ 계약직 보수

※ 인원 증원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특수한 목적이나 사업으로 인하여 **증원이 필요할 시 관련부서(총무과, 재무과)와 사전 협의 및 기성회 이사회의결**

* 장기적으로 고용하는 무기계약직의 소요경비 증액 억제

◇ 편성방법

- 수입대체경비를 운영하는 기관(부서)에서 수입대체경비로 채용하는 기존의 무기계약직원 및 기간제 계약직원에서 무기계약 직원으로 전환되는 무기계약직원의 보수 및 4대보험료, 연차수당, 시간외근무수당, 퇴직충당금 등은 수입대체경비 운영기관 자체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
- 수입대체기관 및 산학협력단 등 기성회회계 외 타 회계에서 채용 직원, 전문직종(국제교류부, 홍보부, 교수학습개발센터, 취업지원본부, 정보전산원, 공동실험실습관 등)에 대한 계약직 보수(4대 보험료 및 퇴직충당금)는 자체 예산에 편성 지급
- 이외의 계약직(단시간근로자 포함)은 기성회회계 예산에 편성할 수 없음. 다만, 특수한 사업 목적이나 업무를 위하여 사회보장보험 적용 제외기간 내(최대 월 60시간미만)에서 근로 계약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

◇ 지급단가 : 국가공무원 보수 및 물가인상률 등 반영

○ 일용잡급

◇ 2012회계연도 사업 종목 범위 내에서 편성하되, 중소기업중앙회의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에 의거 노임단가 기준적용

※ 인건비 산출 시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 및 퇴직충당금 적용 기준

□ 법정요율 적용(학교부담금)

- 건강보험료 2.9%, 국민연금보험료 4.5%
- 고용보험료* 1.2%, 산재보험료* 0.645% * 사업장별·인원별에 따라 변동있음
- 장기요양보험료 : 건강보험료의 6.55%
- 퇴직충당금 : 보수 총액의×1/12

○ 시간강사 강의료(국고부족분)

☞ 강사료는 국고와 기성회회계에서 공동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예산 편성(부족 예산은 추경예산에 반영)

◇ 강사료 지급단가 : 전년대비 10천원 인상

나. 장학금

- ◇ 학생수혜경비인 장학금은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편성
 - 목적장학금(학비감면, 근로 등)
 - * 장학금 종별로 구분 계상
 - 외국인학생장학금
 - 자연계 교수 연구보조 대학원생 장학금
 - 파견교환학생 및 GLP장학금(국제교류부)

다. 도서비

- ◇ 전액 도서 확충사업비로 계상
- ◇ 도서 확충사업비는 국내·외 학술지 등 도서구입비와 이에 따른 부대경비로 도서관에 일괄 편성
- ◇ 법학전문대학원 도서구입비 포함

2. 운영비

- ☞ 기본운영경비는 2011년도 예산액 수준으로 편성하되, 필요에 따라 유동적으로 편성
- ※ 각종 회의(위원회, 업무회의, 간담회, 워크숍 등)는 통합·축소 및 간소화 운용 : 과별 워크숍 등 무분별하고 비생산적인 회의 등은 가급적 억제(예산 미반영)
 - ※ 적극적인 민원해결을 위한 등기 및 소송료, 감정료, 업무위탁대가(수임료) 및 사례금의 실비를 계상하고 본 대학 고문변호사 적극 활용

가. 본부 및 부속기관 운영비

- ◇ 본부 및 부속기관 : 2011년도 운영비 총액에서 산출 편성
 - * 고창캠퍼스 조직신설과 학군단 후보생 증가에 따라 증액
- ※ 별도 회계 운용기관(산학협력단, 발전지원재단)은 자체 운영비에서 총당

나. 대학운영비

- ◇ 전년도 기준 단가 적용하되, 2011년도 운영비 총액에서 산출 편성
- ◇ 대학운영비는 환경개선 등에 우선 투자하고 소모성 경비 최대 억제 편성
 - 업무추진비는 최소금액 계상
 - 자산취득비는 운영비에 반드시 의무 계상하여 교육여건 개선 및 수업·연구 활동을 지원 : 노후화된 강의실 환경개선과 신입교수, 노후 책·결상 등 비품구입비 편성
- ◇ 특근매식비 기준단가 1식당 6,000원 편성
 - * '1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준용

〈배정기준〉 * 기준단가 전년도와 동일

- ▶ 대학 기본경비 : 12,000천원
- ▶ 교직원 경비(1인당) : 250천원
- ▶ 학생 경비(1인당) : 인원 수는 학부, 대학원, 특수대학원생 포함하여 아래 계열별 기준 단가 적용

* 공학 66천원, 이학 63천원, 인문·사회 52천원, 예능 67천원, 의·치·수의 68천원

* 법학전문대학원 52천원, 의·치의학전문대학원 93천원

- ▶ 건물유지비(m²) : 토요일 제외

* 강의실 활용률 50% 이상(m²당) : 800원

* 강의실 활용률 40% 이상 50%미만(m²당) : 630원

* 강의실 활용률 40% 미만(m²당) : 460원

- ▶ 학부(과) 운영비 : 교수 수, 입학정원, 전공 수에 따라 산출

☞ 「국립대학(교) 비국고회계관리규정」개정 사항 반영

- ◆ '교육지원비, 경상보조'과목 폐지

* 과목 폐지에 따라 일반수용비 등을 해당과목에 편성

* 각 부서 교육지원비에서 분기별(4,7,11,1월)로 지급하고 있는 교무처(교무학사행정지원비), 학생처(학생지도지원비), 기획처(기획분야행정능력향상지원비), 사무국(서무행정지원비), 산학협력단(산학협력행정지원비), 대외협력실(대외협력지원비), 입학본부(입학관리행정업무지원비)는 인건비 과목 편성 불가 및 교육지원비 폐지로 예산에 반영하지 아니함

- 학교운영비 과목내 '학생활동지원, 학교행사지원' 신설

※ 관행적 임의 지급하고 있는 각종 수당 편성 금지

3. 실험·실습비

- ◇ 전년도 기준단가를 적용하되 의·치학전문대학원생은 체재 개편에 따른 안정화를 위해 대학원생 기준으로 인상 차액 분을 특별 지원하고, 법학전문대학원생도 전년도 수준 지원
- ◇ 공동활용이 가능한 고가·정밀기자재의 중복투자 방지로 예산절감 및 활용도 증대
- ◇ 실험·실습비는 교육과정 및 수업 등 각종 교육활동에 직접 수반되는 제 경비로 집행하여야 하며, 타 목적으로 전용 사용 불가

〈배정기준〉 * 기준단가 전년도와 동일

- ▶ 공학계열 : 120천원
- ▶ 이학계열 : 114천원
- ▶ 인문 · 사회계열 : 38천원
- ▶ 예능계열 : 123천원
- ▶ 의 · 치 · 수의학계열 : 138천원
- ▶ 법학전문대학원 : 204천원, 의·치의학전문대학원 : 275천원
(특별지원 : 의학전문대 811,974천원, 치의학전문대 326,136천원, 법학전문대학원 57,819천원)

4. 주요사업비

- ◇ 주요사업비는 당초 각 기관(부서)에서 요구한 사업 중 기획위원회 주요사업 심사 소위원회에서 실질 심사 확정된 사업에 한하여 계상토록 하고 타 목적으로 집행 사용을 불허

◇ 일부 사업명 변경 및 통합

- ※ 교무처 : 연구개발사업, 교수해외연구지원 → 국내·외연구교수지원,
행정선진화 → 기관운영 및 회의
- 학생처 : 시설물유지보수 → 불안연수원지원
- 기획처 : 대학특별사업 → 특성화우수학과지원

◇ 일부 사업 소관부서 변경

- ※ 교무처 대학경쟁력강화사업 → 기획처

☞ '12년도 주요사업비는 집행 잔액이 있을 시 반납(불용)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
사업간 목간 전용은 일체 불허할 방침

- ※ 주요사업 요구 및 반영내역 비고란의 필수반영사업 확인 계상

5. 시설사업비

- ◇ 전년도 수준에 일반회계 시설 개·보수비 부족분 일부를 합산하여 반영하되, 공종별로 사업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토록 함

6. 보조금

- ◇ 등록금 인하에 따라 세수가 부족하여 교육역량강화 사업 중 기성 회회계와 사업 연계가 가능한 일부 사업(시설사업비, 강의실 환경 개선 사업, 장학금 등)을 반영

☞ 교육역량강화사업 보조금은 지원 규모 미확정으로 추후 예산각목명세서 작성 시 해당 보조금 지출에 의거 가능한 사업별로 발굴하여 조정 계상 예정

- ※ 각종 국고보조금 대응투자비를 계상하되, 대응투자에 대하여는 투자기준을 설정하여 중복투자나 과다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며, 대응투자예산이 공공요금, 기초실습장비 및 실습재료비 등 대학을 위하여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고, 대응 자금 활용계획서, 집행결과보고서 등을 받아 예산지원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함(대응투자 재원은 해당부서에서 부담 :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성회 회계 지원 불가)

7. 수입대체경비

- ◇ 수입대체경비는 1:1 대응경비로 세입·세출액 동일 계상
- ◇ 계절수업, 정보화교육, 생활관, 중등교원연수원, 평생교육원, 언어교육원, 공개강좌 등 수입대체경비는 모든 수입금이 기성회 예산에 편성되도록 하고, 별도 관리하는 자금이 없도록 함

* 생활관 예산은 '12년도부터 기성회회계 편성

☞ 2012년 국립학교 세입세출 작성지침 ('11. 5. 20, 교육과학기술부)

- 총 수입금의 20% 이상을 “출연금” 과목(공공요금으로 사용)에 계상
 - * 출연금(공공요금) : 강좌운영 총 세입의 25% , 각종 경시대회 총 세입의 20%, 생활관 : 실 소요액
- 국유재산 활용수입 세입·세출예산 편성기준 : 붙임 <참고자료> 참조

- ◇ 수입대체경비 인건비 및 운영비는 다음 기준에 의거 편성·집행
 - 보수 : 계약직 등 자체적으로 고용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도 위 3의 나항, 2)의 가)호 (1)목 인건비 기준에 의거 계상(임의적 보수 책정 불허)

☞ 무기계약직의 인건비(보수, 4대 보험료, 퇴직총당금)는 자체 편성

- 수 당 : 대학입시수당 지급단가 범위 내에서 책정
- 강사료 : 국고 강사료를 기준으로 하되, 특별강사료는 따로 정함
- 업무추진비 : 최소경비 계상

※ 관행적 임의 지급하고 있는 각종 수당 편성 금지

8. 예비비

- ◇ 세수 부족으로 미편성

9. 이월사업비

- ◇ 기성회 이사회의 의결 후 편성

<참고자료>

국유재산 활용수입 세입·세출예산 편성기준

구 분		항 목	편성 및 집행 기준			비 고	
			공공요금	적립금	기타		
일반회계	국고 일반	세입	○ 면허료 및 수수료			증명 발급 수수료	
			○ 관유물 대여료			토지, 건물 대여료	
			○ 고정자산 매각대			건물 등 매각 수입	
			○ 토지 등 매각대			토지, 조경수 매각 수입	
			○ 재고자산 매각대			불용품, 폐품 매각대	
	국고 수입 대체 경비	세입	○ 실험실습 기자재 활용 수입			기자재 사용 수입	
			○ 대학시설 운영·대여 수입			교내 시설 사용 수입	
			○ 주차관리 수입			주차시설 사용 수입	
			○ 생산물 매각 수입			농산물, 가축·원유	
			○ 기타용역제공 등 수입				
		세출	○ 실험실습 기자재 활용수입	30% 이내	-	-	공동실험실습관
			○ 대학시설 운영·대여 수입	30% 이내	-	-	학생과
			○ 주차관리 수입	30% 이내	30% 이내	-	총무과
			○ 생산물 매각 수입	30% 이내	-	-	농생대
			○ 기타용역제공 등 수입	10% 이내	-	-	
기성회계	세입	○ 대학시설이용 강좌운영 수입				부설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수입	
		○ 소비조합 수입				소비조합 운영 수입	
		○ 자판기운영 수입				자판기 운영 수입	
		○ 기숙사 수입				기숙사 수입	
		○ 대학행사 관리·운영 수입				각종 경시대회, 인증시험	
		○ 기타용역제공 등 수입				통학버스요금 등	
		○ 각종 기금				기부금, 부담금	
	세출	○ 대학시설이용 강좌운영 수입	20% 이내	20% 이내	-	학사관리과	
		○ 소비조합 수입	20% 이내	20% 이내	-	소비조합	
		○ 자판기운영 수입	10% 이내	-	-	소비조합	
		○ 기숙사 수입	실소요액	20% 이내	-	생활관	
		○ 대학행사 관리·운영 수입	20% 이내	-	-	예술대	
		○ 기타용역제공 등 수입	20% 이내	-	-		
○ 각종 기금	-	-	-				